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2. 10. 18.

증권선물위원회

- 1. 일 시 : 2022년 10월 18일(화) 14:05~16:49
-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 3. 출석위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2년도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76호 『㈜○○○○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 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별조사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유형의 미공개중요정보 처벌 사례가 있었는지?
 - (보고자) 이것과 유사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다만 유력 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과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 하였던 사례는 여럿 있었음.

- (위원) 특정 대표이사 선임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영향을 미치는 정보인지?
- (보고자) 임원 선임이라는 사실은 중요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음. 유명정치인 또는 유력자들이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 주가가 급등하였던 과거의 여러 사례가 있으며, 이번 사례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시장에서는 이 건을 가지고 호재성 정보로 판단하기에 충분하였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음.
- (위원) ㈜○○○○의 주가 변화를 살펴봤더니 동 정보 공시 와 전혀 관련이 없는 2020년 9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의 주가 변화를 보면 x,xxx원에서 x,xxx원으로 한 130% 가까이 상승하였음. 그리고 이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후인 11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주가 변화를 살펴봐도 x,xxx원에서 x,xxx원으로 한 74%가 상승을 하였음. 그리고 금감원 주장대로 10월 22일 공시 후에 26일까지 주가가 40% 상승한 것은 맞지만 그 이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를 보면 또 18%가 하락하였음. 그래서 이런 주가흐름을 살펴봤을 때 과연 이 40% 상승한 것이 ◉◉● 대표이사 선임으로인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당시 ㈜○○○○ 주가는 공시가 있기 전에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있었던 것은 맞음. 그전에 目目目 目目 目 目계약을 체결했다든지 하는 호재성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은 분명함. 다만,

- ●●● 대표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시점에 있어서 당시 코스피지수는 0.6% 하락하고 다른 ���� 지수는 1.3% 상승한 것에 비해서 ㈜○○○○ 주가는 52.9%가 상승하였음. ●● 대표이사 선임 공시와 관련해서, 그런 점으로 볼 때 당시의 업종 지수라든지, 전반적인 주가 흐름에 비해서 급등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는 다른 공시가 없는 상황에서 ●●●의 대표이사 선임으로 인한 단기 급등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음.
- (위원) 해당되는 정보가 시장에서 완전히 반영된 후 11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때도 x,xxx원에서 x,xxx원 거의 한 74% 정도 상승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과연 ◎ ◎ 대표이사 선임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음.
- (보고자) 이것을 시작으로 매수세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짐.
- (위원) 정보 공시 전에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주가가 한 30% 정도 상승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하 시는지?
- (보고자) 통상 정보가 공개된 이후부터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저희가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정보생성시점을 10월 20일 아침에 생성된 것으로 봤지만 시장에서는 19일부터 그 정보의 영향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음.

- (위원) 그러니까 정보가 시장에 어느 정도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 보고안건 제45호『㈜○○○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긴급조치 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46호『○○○○㈜ 주식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긴급조치 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47호『㈜○○○○○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등 긴급조치 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48호『㈜○○○○○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긴급조치 결과 보고』를 일괄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접수함
- □ 의결안건 제177호 『대한토지신탁㈜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대표이사 ○○○임. 당사는 해당 혐의가 자본시장법에 반하는 대주주 신용공여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음. 금감원은 2016년 부동산신탁사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책임준공확약은 신탁업자 본인의 채무에 해당하고 지급보증 및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에 저희 회사는 책임준공확약에 위법소지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임. 또한, 금번에 지적된 신탁사업은 회사의 손실 없이 사업이 완료되었거나당사의 책임준공의무가 소멸되었고 실제로 해당 공사 진행과정 중 당사 및 대주주, 특수관계인 누구도 신탁사업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 당사가 본 건으로인해 과중한 조치를 받을 경우 당사에 대한 대외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그간 공공성을 강조해 온당사 및 당사의 대주주인 ◎◎◎◎에 크나큰 부담으로작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음.
- ▶ (진술인) 법률대리인임. 우선 책임준공확약은 신탁업자 본인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의 신용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로 인해서 당사에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도 없어 신용공여로 볼 수 없음. 특히, ☆☆☆사업현장의 경우 두 개의 시공사가 참여했는데 주책임 시공사도 아닌 일부 보조 시공사가 당사 대주주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전체 사업에 대해 신용공여로 보는 것은 매 우 부당하다고 생각함. 무엇보다 당사는 금감원 입장 표 명을 믿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검사 및 제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해 주시기를 바람. 책임준 공확약의 본질은 시공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탁사가 시 공사를 대신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준공을 완료함으로써 PF사업을 정상적으로 완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으로 신탁회사가 부담하는 본인의 채무이지, 다른 누군가 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한 거래가 아님. 금감원도 책임준 공확약은 신탁업자 본인의 채무에 해당하고 지급보증이나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또한, 책임준공확약은 당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 능성이 없었고 실제로 손실을 초래하지도 않았음. ☆☆☆ 현장의 경우 필수사업비의 약 89%가 확보되어 있고 부족 한 사업비는 시행사가 조달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당 사가 추가로 사업비를 부담할 가능성은 없었음. 실제로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완료해서 당사는 책임준공의무에서 이미 완전히 벗어났음. 싫싫싫 현장 역시 마찬가지임. 필 수사업비 98%를 확보한 상태여서 추가사업비 부담가능성 이 사실상 없었고, 대출금이 전액 변제되어 책임준공의무 가 모두 소멸하는 등 당사에 손실초래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도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음. 당사의 책임준공의무 는 시공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부담하는 예비적 의무에 불과한데 이는 당사가 부담하는 본인의 채 무이지, 누군가의 신용을 보강하는 것이 아님. 또한, 충분 한 필수공사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분양대금 및 여러 안전장치를 고려할 때 당사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는 없었

음. 특히, 요요요의 경우 시행사는 당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 그리고 시공사는 복수로 참여했는데 그중 ■■■■ ■㈜는 전기통신설비만을 담당하는 보조시공사로서 공사 지분율도 2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한 신 용공여로는 볼 수 없음. 주책임 시공사가 따로 있음에도 검사국은 본 건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PF대출금의 모 두를 ■■■■●㈜에 대한 신용공여액으로 산정하셨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지적사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다음으로 과징금 산정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우선, 당사는 책임준공확약이 대주주 신용 공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 고 생각함. 그러나 가사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과 징금 면제대상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당사는 2016년 책임준공확약은 지급보증이나 손실보전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금감원 견해 표명을 신뢰하였고 그 이후 명 확한 조치 선례나 지침 등이 없는 상황에서 본 건 사업을 진행해 왔음. 이는 다른 신탁회사들도 마찬가지였음. 당사 를 포함한 업계 모든 신탁회사들은 책임준공확약은 신용 공여가 아니라고 받아들였지, 책임준공확약이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해한 곳은 아마 한 군데도 없었을 것 임. 이처럼 당사가 책임준공확약을 하게 된 배경에는 금 융감독 당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자리하고 있고 당사가 이를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책임준공확약이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만큼은 면제되어야 함. 또한, 검사 국은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을 PF대출실행금액으로 잡고 계시는데 이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함. 만약 책임준공확약 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면 그 예상손실금액이 기준금액이 되어야 할 것인데 당사는 PF대출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해당 금액은 당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 따라서 당사에게 어떠한 손실발생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당사가 추가로 투입하게 될 사업비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굳이 손실발생금액을 예상해 본다면 필수사업비 중에서 모자란 금액 정도가 될 것인데, ☆☆☆의 경우 76억 원, ♤♤♤의경우 18억 원 정도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했을 때 겨우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음.

- (위원) 신탁사가 직접 차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행사가 차주이고, 차주에 문제가 생겼을 때 PF대출금액에 대해서 원리금을 손해배상 형식으로 대신 상환하는 형태로서 신용공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진술인) 시행사나 시공사가 문제되어서 책임준공을 이루지 못했을 때 신탁사가 2차적으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신탁사 본인의 채무임. 본인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손해배상 상당금액이 PF대출 원리금 상당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나 시공사의 신용을 공유하거나 또는 그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함.
- ㅇ (위원) 시공사 문제가 생겨서 책임준공을 못하면 다른 시공사

를 구해서라도 하는 채무라면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는 PF대 출채무에 대해서 커버(cover)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닌지?

- ▶ (진술인) 신탁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하지 못했을 때 다른 시공사를 구하든지해서 준공을 완료하는 것이 신탁사의 채무임. 그 채무를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지는 것이지, 대출원리금 상당에 대한 시공사 또는 시행사의 채무를 보증한다거나 넘겨받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함.
- (위원) 그러니까 신탁사의 귀책사유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 무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의무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닌지?
 - ▶ (진술인) 실질에 있어서는 갚아야 될 대출금 원리금 상당 액이라는 금액 자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함.
- (위원) 진술인들께서는 이것이 본인의 채무이지, 신용공여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의 채무와 신용공여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림.
 - (진술인) 책임준공확약을 통해서 신탁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완성 못했을 때 그것을 대신해서 마지막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 의무이고, 이것은 확약에 의해서 당연히 저희가 부담하는 채무라는 의미임. 그런데 신용공여는 대상이 있을 수 있겠음. 예를 들면 ☆☆☆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 ☆☆☆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문제되

고 있는데, 당사가 아닌 제3자의 지급불능사태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자산을 투입하는 것을 신용공여라고 생각함. 그래서 제3자에 문제가됐을 때 그런 문제점, 그런 위험이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이 신용공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임준공확약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완성하지 못했을때 신탁사가 그것을 완성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신용공여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음.

- (진술인) 제가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신탁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는 말 그대로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물권을 준공하는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그래서 2016년 준법감시인 경영간담회 자료에서 금감원에서도 책임준공은 신탁사 본연의 채무라고 말한 것이 있어 신탁사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서 해석을 한 것임. 그리고 신용공여도 동일한 쟁점에서 해석을 했기때문에 지급보증이나 손실보전이 아니고 그렇다면 신용공여가 아니라 정당한 일반적인 신탁사업 범위 내에 신탁사가 추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입을 한 것임.
- (위원) 대출을 일으키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책임준공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은지?
 - ▶ (진술인) '책임준공의무를 다 하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할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대주 입장에서도 준공이 다 되어야 본인들도 대출원리금 회수가 용이하기 때

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까 싶음.

- (위원) 부동산신탁사 14개사 중에서 일종의 책임준공을 한 곳이 7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2016년에 금감원에서 책임준 공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업계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음. 실제 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계열사 쪽에 신용공여를 하면 안 된다고 인식하 고 있었던 것인지, 대한토지신탁㈜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신 탁사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금감원이나 진 술인께서 추가로 보충설명하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람.
- (보고자) 책임준공은 14개가 다 하고 있음. 아까 7개라고 말씀드린 것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시행사·시공사를 두고있는 곳이 7개라는 뜻임.
- (위원) 14군데가 전부 책임준공을 하고 있는데 그 14개 중에 7개가 시공사나 시행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토 지신탁㈜과 같은 사례는 없다는 말씀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지?
 - ▶ (진술인) 2016년에 준법감시인 간담회 이후에 업계 전반적 으로 책임준공확약이 신용공여가 아니라고 이해를 같이 하

고, 그런 인식 하에서 2017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고 지금 이 업계에서 자리 잡은 것으로 알고 있음. 2016년 당시에 이것이 신용공여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렇게인식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 같지는 않음. 대부분은 다 신용공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했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본인의 채무에 해당되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 (보고자) 지급보증이 아니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쓴 것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위반을 따질 때 자본시장법상의 신용공여 해석을 따져야 되는데, 거기 보면 본인 채무 모두 포함해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모든 파생위험, 신용위험, 지급보증을 포함하기 때문에본인의 채무가 확정된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본시장법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때는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신용·파생위험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음.
- ㅇ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 보류*함
 -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78호 『㈜머스트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 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 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79호 『케이알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업무 단 위 추가등록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0호 『브이아이금융투자㈜의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1호 『참존글로벌㈜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 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2호 『주은테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경 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서 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3호『○○○○ ○○○의 회계관련 부정행유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보고안건 제49호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 관련 향후 대응방향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회계기준원에서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업무에 더해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 을 부탁드림.
 - (보고자) 현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일반적인 IFRS재단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회계와 동떨어져서 추진된 것은 아니고 재무보고와 비재무적 지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어서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지속가능성 검토기준을 현재 회계기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IFRS재단에서 회계뿐만 아니라 ESG공시기준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서 이것을 유기적으로 같이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 (보고자)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회계기준원 예산이 대략 한 80억 원 정도 되는데 회원들한테 받는 분담금이 10억 원 정도임.
 - (위원) S1 공시기준이 제정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 (보고자) 잠정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법조문으로 명확히 그것을 말씀드리면 IFRS재단에서 만드는 회계기준이나 공시기준은 어떠한 국제법상 조약이나 이런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감독당국에서 이것을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명시적인 도입 절차가 있어야 도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그러면 만약 S1, S2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ESG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일정은 S1, S2 적용과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 (보고자) 저희가 ESG공시 의무화 일정을 발표했을 때는 IFRS재단에서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에 ESG공시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할 사항으로 생각됨.
- (위원) 기본적으로 ESG 자체를 강조하는 글로벌 트렌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동시에 ESG 자체에 대한 제고를 하는 것도 역시 글로벌 트렌드임. ESG, 특히, E하고 S가 기업가치 투자자와 어떻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없고, 의견이 분분함. 그런 상태에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음. 특히 ESG에 있어서 국가적인 특이함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 KSSB를 설립하여 진행하실 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대변하는 것에 특별히 주안점을 두어서 진행해 주셨

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림.

- (보고자) 최근 ESG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에너지 위기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와비판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49분 폐회)